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. 2. 7 선고 2022가단570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

담당변호사 조준행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

담당변호사 공재한

변 론 종 결 2022. 12. 20.

판 결 선 고 2023. 2. 7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7. 11. 21. 접수 제34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78. 11. 11.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2. 1. 13. 원고들 명의로 각 2/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위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은 1997. 11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. 11. 21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지분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,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,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,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

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,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·입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, 피고는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, 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인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 점, ② 평택시 E동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는 원고들이 1997년에 인감증명서를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당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, 피고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거나,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지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 소유라는

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송승환

별지